**M&A 자 문 용 역 계 약 서**

본 계약은 [ ](이하 “갑”)과 [ ](이하 “을”) 사이에 2000년 [ ]월 [ ]일에 체결되었으며 체결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 조 (목적)**

갑은 국내외 기업 (이하 “대상회사”)을 인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바, 대상회사의 인수(이하 “대상거래”)를 위하여 갑은 을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이에 관한 자문업무를 위임하고자 자문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업무수행범위)**

2.1. 본 계약에 따라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자문용역업무를 제공한다.

2.1.1. 대상회사 탐색활동

2.1.2. 대상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거래구조 설계 및 매수 전략 자문

2.1.3. 대상회사에 대한 관련 정보의 분석

2.1.4. 대상거래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분석

2.1.5. 대상주식의 소유자 및 대리인과의 협상

2.1.6. 갑에 의해 진행되는 실사에 대한 전략수립 및 지원

2.1.7.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등(이하 “외부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 지원

2.1.8. 대상거래와 관련된 절차 및 제반업무 지원

2.1.9. 기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업무

2.2. 갑과 을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제2.1.조의 자문용역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계약기간)**

3.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 ]개월로 한다.

3.2. 제3.1.조의 기간 내에 대상거래에 관한 양해각서 내지 이에 준하는 문서(이하 “양해각서 등”)가 체결되면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까지 연장된다.

3.3.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해 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 대상거래에 관한 계약에 대한 문구검토가 시작되면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될 대상거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다. 다만, 대상거래에 대한 계약이 본조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자문수수료)**

4.1. 본 계약에 의한 계약금 또는 착수금은 없다.

4.2. 갑은 대상거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대상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갑은 해당 주식인수 계약(이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성공보수로서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1/2을, 인수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나머지 1/2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

4.3. 을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출장비, 인쇄비, 기타 일반 부대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본 계약과 관련한 해외출장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한 왕복항공료 및 현지 체재비는 갑의 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갑의 사전승인 후 집행하도록 한다.

**제 5 조 (외부전문가의 활용)**

대상거래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업무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변호사,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등)를 선임하며, 외부전문가의 용역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을은 해당업무가 외부전문가에 의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한다.

**제 6 조 (비밀유지)**

6.1.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내용 및 조건, 갑의 대상거래 추진과 관련된 각종 계획과 의사결정에 관한 자료나 정보 및 당사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본 계약에 의한 대상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잠재적 대상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6.2. 제6.1.조의 경우 및 법령에 의한 정부기관 또는 법원의 공개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교환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일반에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6.3. 본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1년간 유지된다.

**제 7 조 (업무위임)**

7.1. 갑은 본 계약서상 계약기간 중 을의 주선으로 대상거래에 관하여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업체와의 자문업무에 대해서는 을에게 독점적으로 일임한다.

7.2. 갑이 제7.1.조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을이 주선하여 양해각서 등이 체결된 상대방과 본 계약의 계약종료 후 1 년 이내에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 계약상의 자문수수료 전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신의성실의무 및 면책)**

8.1. 을은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8.2. 대상거래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및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8.3.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에 참가한 을의 임직원(이하 “면책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실, 피해, 의무, 책임을 면책하기로 한다.

8.4. 위 면책대상이 본 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제소되는 경우, 갑은 을이 그 소송으로 인해 부담한 금원(각종 소송을 위한 조사비용 및 변호비용을 포함한다)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8.5. 본조 제3항 내지 제4항은 면책대상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을은 당해 손해 발생액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자문수수료를 한도로 갑에게 배상한다.

**제 9 조 (상호 협조)**

9.1. 당사자들은 필요한 자료나 정보 또는 의사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9.2. 을은 갑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9.3. 을은 업무의 추진현황을 수시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불가항력)**

오로지 천재지변, 정부의 행위, 폭동, 전쟁 또는 당사자의 지배범위를 넘는 기타의 사유에 의한 어느 일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의 의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11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의 해제 및 종료)**

12.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그 일방 당사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최고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2.2.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행의 최고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2.3. 갑과 을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 13 조 (관할에 대한 합의)**

본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배타적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날인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2000년 00월 [ ]일

“갑”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인)

“을”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인)